

## “화합하고 정진하라”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월 4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종정 법전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전 스님은 이날 신년교시를 통해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이 땅에 머물게 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화합이 제일덕목”이라며 “인간의 사표인 출가대중은 자기정화의 지혜를 모으고 불퇴전의 정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중앙신도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글·사진=박재원 기자



## 은해사 문화재예산 삭감 논란

“영천시의회 일방적 조치 부당” 반발 여론

경북 영천시의회가 은해사 관련 문화재 예산을 삭감해 은해사와 갈등을 빚은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영천시의회 예결특위는 은해사가 시책사업인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건의 은해사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2억655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은해사는 법의 스님(영천 죽림사 주지)과 법일 스님(은해사 부주지)을 공동위원장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영천시의회가 주장하는 삭감 명분인 은해사 집단시설사업 비협조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동 사업은 물론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 협조했다”고 밝히며, “영천시 의회 의원들이 민의를 거슬러 예산을 삭

감하는 것은 폭거”라 주장했다.

현재 영천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는 이번 문화재예산 삭감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지역민들로 어수선하다. 신창수씨는 “세계가 자국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는 때 이번 문화재 보수예산 삭감조치는 영천시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퇴보시킨 참담한 조치”라며 예산 지원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대책위원장 법의 스님은 “은해사 부근 공원조성 사업에 은해사 소유 토지가 포함됐는데 그중 주자장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 문제의 발단 같다. 2.3월 중 열리는 추경에 예산이 지원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의회 임상원 의장은 1월 3일 기자의 통화 요청을 바쁘다며 거절했다. 조동섭 기자

# 아는만큼 보호받는 지적재산권

최근 불교문화 및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도치 않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 자료집을 출간했다.

책에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황과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재산권 문제, 불교문화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불화·불상·경전 등 불교문화의 종류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도 사례별로 정리했다. 자료집을 토대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무엇인지 짚어본다.

◆사찰 건축물=저작권법상의 건축물 정의에 따르면 사찰 전각이나 탑, 석등, 전시장, 공원 등도 포함된다. 때문에 특별한 양식의 사찰건축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 세워지는 사찰이나 탑, 부도, 부속건물의 경우 건축가가 그 저작권을

## 조계종, 불화·경전 등 사례별 정리 자료집 발간

가진다. 이 경우 건축 저작물의 개보수 또는 변형을 위해서는 건축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웅전과 같이 사찰의 중심 건물을 대량으로 인쇄해 엽서 또는 달력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불상·불화=최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불상과 불화 역시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된다. 비록 사찰이나 개인이 불화·불상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목적’ 이외에 불화·불상을 야외에 전시하거나 출판 등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불화나 불상의 경우 건물 내에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품에 문제가 생겨 수선을 해야 할 경우에도 작가에게 연락해 수선을 부탁해야 하며,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임의로 작품을 수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선을 해야 할 경우라도 저작물이 원래의 작품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품

의 본질성을 해치게 되는 경우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불화·불상의 활용방법과 개보수문제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약정을 맺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임의로 같은 불화·불상을 제작해 유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천에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불교경전=한자나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표기된 불교경전은 저작권자가 따로 없다. 하지만

이러 할지라도 새롭게 재해석하고 안무를 구성했다면 안무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다. 창작무용일 경우는 당연히 안무가가 저작권을 가진다. 불교무용에 사용되는 음악은 작곡가가, 불교무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촬영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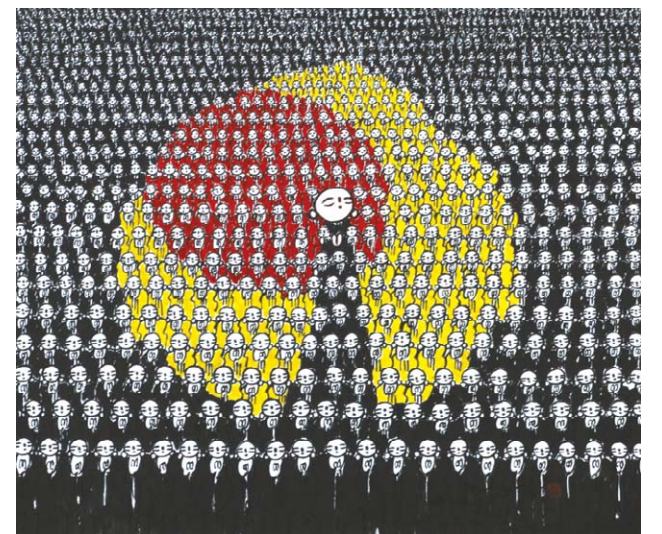
◆사진저작물=법당이나 조각 등 입체적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조명 등 연출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면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평면적인 회화를 사진저작물로 인정할 것인가는 아직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회화 등의 평면적인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은 단순 복제로 취급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사람이나 스님의 동의 없이 스님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며, 허락을 받은 후 촬영한 것은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때문에 제3자가 법회를 촬영하도록 허락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여수령 기자

새연재 | 오늘의 禪語/윤창화 ▶8면

## 심회당의 세상만사



화엄법계도 / 천년의 세월을 씻고... '一心'

달도 휘고 해도 휘고 / 해인저 달인지 사람인지 / 무슨일로 저렇게 / 한덩어리로 서있는가? / 끼인 밤은 어찌라고!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강원회 변호사)  
 017-535-0685 (김기원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저등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연등 저등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보초접등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